

보험계약대출 약정서



본인은 한화생명보험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로부터 보험계약대출을 받음에 있어 다음과 같이 약정합니다.

• 제 1조(정의)

- (1) "보험계약대출"이라 함은 보험계약의 **해지환급금 범위**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으로 금전을 차용하는 것을 말한다.
- (2) "보험계약대출대상계약"이라 함은 보험계약대출의 기초가 되는 보험계약을 말한다.

• 제 2조(보험계약대출기간, 원리금상환)

보험계약대출의 대출기간은 보험계약대출대상계약의 보험기간(연금보험의 경우 연금개시전) 내로 하되, 본인은 언제든지 보험계약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다.

(단, 2005.4.1 이후 판매상품은 보험료미납으로 해지된 상태에서는 대출 및 상환이 불가합니다.)

• 제 3조(대출이자납입 등)

- (1) 보험계약대출의 이자율은 회사가 정한 바에 따르며, 이자율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일 이후의 기간에 변경된 이자율을 적용한다.
- (2) 보험계약대출이자자는 일단위로 계산하여 매월 대출 해당일(이하 "이자납입일"이라 한다)에 납입하며, 이자납입일을 경과하여 이자를 납입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이자납입일까지 발생한 이자를 보험계약대출금에 가산하여 산출된 원리금에 이자를 부과한다.
(단, 2010.9.30일까지는 연체시 연체이율이 적용됩니다.)
- (3) 이자납입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최초영업일에 이자를 납입할 수 있다.
- (4) 이자납입일 이전에 이자를 납입한 때에는 이자납입일을 기준으로 선납한 기간에 대하여 회사가 정한 이율로 할인한다.
- (5) 이자납입은 은행자동이체 납입을 원칙으로 하되, 전화이체나 전자금융서비스(인터넷, ARS, ATM)를 이용하여 납입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회사에 내방하여 납입할 수 있다.
- (6) 은행자동이체로 보험계약대출이자를 납입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지정하는 이체일을 이자납입일로 하며, 회사는 다음 이체일에 재청구 한다.
- (7) 보험계약대출이자를 자동대출납입의 방법으로 납입하기로 약정한 때에는 매월 이자납입일에 해지환급금에서 자동으로 이자상당액을 대출받아 이자를 납입하는 것으로 하되, 이자 상당액은 보험계약대출금에 가산한다.
- (8) 보험계약대출 실행일에 상환되는 경우에는 1일분의 이자를 수납하여야 한다.

• 제 4조(기한이익의 상실등)

- (1) 다음 각호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로부터 독촉이나 통지가 없더라도 당연히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즉시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변제하기로 한다.
 - ① 보험계약대출대상계약의 보험기간이 만료되거나, 대상계약이 무효로 된 때
 - ② 2002.8.1. 전에 체결된 보험계약을 기초로 한 보험계약대출의 경우 보험계약대출원리금 합계액이 해지환급금을 초과한 때
 - ③ 2002.8.1. 부터 2005.3.31. 까지 체결된 보험계약을 기초로 한 보험계약대출의 경우 대상 보험계약이 보험료 미납을 이유로 해지되고 보험계약대출원리금 합계액이 해지환급금을 초과한 때
 - ④ 2005.4.1. 후에 체결된 보험계약을 기초로 한 보험계약대출의 경우 보험료미납을 이유로 대상 보험계약이 해지되는 때
- (2) 보험계약대출 이자미납 등의 사유로 제 1항 2호, 3호 및 4호의 보험계약대출 원리금 합계액이 (**해지환급금을 초과**)하는 경우에 보험계약이 (**자동해지**) 될 수 있습니다.
- (3) 보험계약대출 처리 후 계약사항 변경이나 기타사정으로 해지환급금이 변동되어 보험계약대출원리금 합계액이 그 해지환급금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본인은 초과분을 즉시 상환하여야 한다.

• 제 5조(우선변제)

보험계약대출계약에서 정한 제지금(제보험금, 반환보험료, 해지환급금, 배당금 등을 포함하되, 이에 제한되지 아니한다)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회사는 대출기간의 만료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보험계약의 약관에서 정한바에 따라 제지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공제할 수 있고 나머지 잔액을 본인이나 보험금을 받는자(보험수익자)등에 지급할 수 있다.

• 제 6조(주소변경통지)

본인은 주소가 변경된 경우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고 주소변경통지를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는 본인의 책임으로 한다.

• 제 7조(부대비용)

보험계약대출 관련 인지대는 본인과 회사가 각 50% 부담하며, 기타비용은 본인이 부담한다.